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31 선고 2021나1578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31 선고 2021나1578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9 선고 2019가단521443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

담당변호사 김말금, 이선영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

담당변호사 김선욱

변론종결 2022. 5. 3.

판결선고 2022. 5. 31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9. 선고 2019가단5214432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영천시 I 공장용지 690㎡에 관하여 2015. 6. 22. 체결한 증여계약을 78,437,6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78,437,6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을 제14, 33 내지 38, 42, 43호증(가지번호를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C이 2006. 1. 31. 10여년 가량 운영해 오던 주식회사 F를 폐업한 사실, 피고가 위 E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을 낙찰받은 다음 2010. 6. 29.부터 J 등과 사이에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보증금 1,500만 원 내지 2,500만 원, 월 임료 200만 원 내지 270만 원으로 정하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이를

임대하여 주된 소득원으로 삼은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C이 2005년경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사업상 1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였는바, 이 경우 그 회사 또한 부채나 법인세 등 체납으로 운영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, 따라서 C으로서의 자신의 명이나 주식회사 F를 통해서는 더 이상 기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부득이 주식회사 F를 폐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주식회사 F를 폐업할 당시 C(1954년생)의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경제적 생활을 한창 지속할 때이고, C이 사업실패 후 피고나 그 자녀들과 별거하는 등 가장으로서 경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와 경제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생활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면, C이 주식회사 F를 폐업한 후 어떠한 사업이나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만이 경제생활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오히려 C이 자신의 명이나 주식회사 F를 통해서는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들을 취득한 후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을 소득원으로 삼아 부부가 함께 경제생활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춰 볼 때,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오로지 피고 자신만의 사업을 위해 위 부동산들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. 또 이것만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선불리 인정할 수도 없다.

○ C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다, 2015. 6. 12. 경상북도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5. 6. 22.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, 2015. 6. 23. 자신 및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마친 것을 보면, 2015년경에도 여전히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곧바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.

○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2001. 1.경 영천시장과 도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15. 5.경 수의계약의 기회를 얻어 매수한 것으로, 피고나 C 모두 오로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온 C만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. 그러하기에 C은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였고, 피고와 C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‘명의신탁 해지’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‘증여’라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다. 이러한 점에서 피고나 C 모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

체결하였다거나 명의신탁의 의사로 C 앞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, 수의계약의 내용 그대로 C을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려 했다고 판단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곤, 판사 이흥관, 판사 윤동연